

#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3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종배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6명)

### 1. 제안이유

- 「물환경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항 번호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 상위법인 「물환경보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 근거조항을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에서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으로 수정함. (안 제23조제3항제2호, 안 별표 3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물환경보전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제2호 중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의”를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의”로 한다.

별표 3 사용료 산정기준 중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의”를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3조(사용료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<u>물환경보전법</u>」 제32조제8항의 -----</p> <p>3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&lt;별표 3&gt;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</p> <p>□ 사용료 산정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질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농도 또는 같은 법 <u>제32조제8항의</u>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.</li> <li>· 생물학적산소요구량(BOD)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, 부유물질농도(SS), 총질소 (T-N), 총인 (T-P)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.</li> <li>· 폐수배출량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.</li> </ul>	<p>제23조(사용료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<u>물환경보전법</u>」 제32조제9항의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별표 3&gt;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</p> <p>□ 사용료 산정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2조제9항의</u> ----- -----</li> <li>· (현행과 같음)</li> <li>· (현행과 같음)</li> </ul>